영동양수발전소 1,2호기 토건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2024. 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주)'라 한다)의 사규 계약규정시행세칙 제28조에 의거 한수원(주)가 발주하는 "영동양수발전소 1,2호기 토건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라 한다) 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사분야별 배점 및 세부심사기준)

① 사전심사는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한다.

② PQ분야 및 배점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100점을 한도로 한다)

1. 시공경험 : 45점

2. 기술능력 : 45점

3. 시공평가결과 : 10점

4. 신인도 : -7점 ~ + 5점

③ PQ심사 세부기준은 [붙임 1-1]과 같으며, PQ심사 시 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심사분야별 평가방법에 의한 평점이 가산점 등으로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이 경우 신인도 점수와 타심사분야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시공실적의 증명 등)

① 최근 2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공사의 시공실적의 증명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공사협회에서 발행한 시공실적 증명서에 의한다. 단, 국외의 시공실적은 관련국가의 건설협회 등 관련 공사협회가 발행한 시공실적 증명서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실적증명서에 주재국 공관의 확인이 있어야한다. 동 증명서에는 당해공사의 공사내용, 규모, 도급금액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② 국내외 시공실적은 내국인인 경우 국내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시공실적으로 인정하며, 외국인 건설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건설업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함)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하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 ③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 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④ 동일공사로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다.
 - 1. 발전소 : ①양수발전소 또는 ②댐과 터널을 동시에 수반한 수력발전소 건설공사
 - 2. 댐 : 석괴댐 건설공사
- ⑤ 유사공사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다.
 - 1. 발전소 : ^①양수발전소 또는 ^②댐과 터널을 동시에 수반한 수력발전소 이외의 발전소 건설공사
 - 2. 석괴댐 이외의 댐 건설공사
 - ※ 시공 중인 동일 또는 유사 공사의 실적은 당해공사의 예정공정표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필한 후 발주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성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에 한하여 그 완성비율 만큼 실적으로 인정
 - 예시) 시공중인 단위호기 시설용량(또는 댐 높이)×완성비율(기성율)
- ⑥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은 하도급에 관계없이 원도급자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 ⑦ 공동이행도급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규모 및 금액의 실적 인정은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 단, 도급계약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제시 및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⑧ 원계약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공사에서 토건공사 실적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실적을 인정한다.
- ⑨ 국외 공사인 경우 실적금액은 준공일 기준 대한민국 외국환 은행에서 고시하는 전신환매도율로 환산 적용하되, 고시이외의 화폐인 경우에는 \$(USD)화를 기준으로 하여 환산 적용하고, 대한민국 외국환 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전신환매도율 증명서를 제출하다.
- ⑩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에는 인·허가 서류 및 공사가 준공 되었다는 관계서류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서(도급계약서 포함)를 제출한다.
- ⑪ 실적 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출된 실적증명서 등의 심사시 설명, 확인 등의 입증 책임은 시공실적을 제출한 당해 회사에 있다.
- ③ 최근 5년간 건설공사의 실적합계 금액은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법령에 의거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서 통보한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실적으로 하며, 관련 협회에서 증명한 실적증명서 또는 최근 5년간 실적자료를 직접제출한 경우 그 자료에 의거 평가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 ① 사전심사는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한다.
- ② 경영상태부문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영상태부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 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B-(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 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은 BB0) 이상
 - 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A3⁻(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 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은 B⁺) 이상
 - 다.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은 BB⁰) 에 준하는 등급 이상
- ③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신인도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평점 90점 이상으로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심사시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에 대한 기준은 붙임1-1과 같다.

제5조(PQ심사 신청)

- ① PQ심사 신청자가 신청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붙임1-2와 같다.
- ② PQ심사 신청 제출서류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한국어 이외의 언어에 의해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 및 번역 공증서를 첨부한다.
- ③ 공동계약조건으로 PQ 신청시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20년 이내 수력 또는 양수발전소 시공실적과 댐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시공실적(단, 실적 제출 마감일까지 준공실적 및 입찰공고일 기준 기성실적율이 50% 이상인 경우 실적으로 인정)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자의 제출서류를 제4조의 세부심사 기준에 따라 신청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경영상태부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마감일 현재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다만, 입찰공고일 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합병 후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 평가서가 없을 경우 PQ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시스템에 등록한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④ 제2항의 신용평가등급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⑤ 제1항의 심사결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적격요건과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에 대한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제7조(심사결과의 통보)

- ① 계약담당자는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당해사실을 우리회사 전자상거래시스템에 게시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제6조에 규정한 심사관련서류의 열람을 원할 때에는 제1항의 게재일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허용한다.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 ①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수급협정서의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제2항과 같이 평가하며 공사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에 대한 입찰공고일 현재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공시액 합계금액의 비율을 한도로 한다.
- ②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공사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을 곱한 금액이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공시액 합계금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③ 시공경험 평가

가. 최근 20년간 공사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동일 또는 유사공사 실적의 합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동일 또는 유사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최근 5년간 시공 실적금액 합계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

기술능력의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기술능력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합산하여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단,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및 교육수료 현황, 기타 당해 공사에 필요한 사항(사업관리 조직 보유 여부) 평가항목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시공비율은 미 적용) 평가한다.

⑤ 시공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시공평가 점수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한다.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⑥ 신인도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배점)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제9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위조, 변조, 허위,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및 신인도 분야 감점 사실 누락 등)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 1. 제6조제5항에 의거 적격자를 선정하기 이전일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2. 입찰실시 이전일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한다.
- 3. 한수원(주)의 계약규정시행세칙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10조(관련규정 등의 준용)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수원(주)의 계약규정, 계약규정시행세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 ① 이 기준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완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 ②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소수점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 나. 각 분야별 평가점수에 가감률이 있는 경우에는 가감률을 적용한 후 분야별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붙임 1-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 1-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출서류

붙임1-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심사분	분야	심 사 항 목			세 부 심 사 기 준		
분야별	배점	항목별	배점	분류기준	세부항목	배 점	참가업체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حا ا	한도 100		한도 100			공 동	
계 1.시공 경험		□ 발전소(토건공사) 가. 최근 2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시공 중인 실적 포함)	20	양수 또는 수력발전소	 ○ 단위호기 시설용량 50MW이상 양수 또는 수력발전소 건설실적 ○ 단위호기 시설용량 45MW 이상 50MW미만의 양수 또는 수력발전소 건설실적 ○ 단위호기 시설용량 40MW 이상 45MW미만의 양수 또는 수력발전소 건설실적 ○ 단위호기 시설용량 35MW 이상 40MW미만의 양수 또는 수력발전소 건설실적 ○ 단위호기 시설용량 35MW 미만의양수 또는 수력발전소 건설실적 	19.00 18.00 17.00	1. 시공경험분야 : 발전소(토건공사) "가"와 "나" 항목 중 수급체별로 택일적용 2.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범위(발전소) ○ 양수발전소 또는 댐과 터널을 동시에 수반하는 수력발전소 건설공사 ○ 시공 중인 동일공사의 실적은 당해공사의 예정공정표상 5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필한 후 발주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성실적증명서를 받급받은 것에 한함 - 인정실적규모 : 시공중인 단위호기 시설 용량×기성실적률×시공비율 3. 실적증명 ○ 발주기관 또는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완공실적 증명서 4. 실적인정 범위 ○ 국내외 실적 인정 - 토건공사 수행실적만 인정 - 다수의 실적이 있을 경우는 각 업체별로 단위호기 1기 실적만 인정 5. 기간기산일 : 입찰공고일 기준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세 부 심 사 기 준		
분야별	배점 한도	항목별	배점 한도	분류기준	세부항목	배 점 공 동	참가업체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1.시공 경험		□ 발전소(토건공사) 나. 최근 2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시공 중인 실적 포함)		양수 또는 수력발전소 이외의 발전소 건설실적	 ○ 단위호기 시설용량 50MW이상 양수 또는 수력발전소 건설실적 ○ 단위호기 시설용량 45MW 이상 50MW미만의 양수 또는 수력발전소 건설실적 ○ 단위호기 시설용량 40MW 이상 45MW미만의 양수 또는 수력발전소 건설실적 ○ 단위호기 시설용량 35MW 이상 40MW미만의 양수 또는 수력발전소 건설실적 ○ 단위호기 시설용량 35MW 미만의양수 또는 수력발전소 건설실적 	13.00 12.35 11.70 11.05	1.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범위(발전소) ○ 유사계수 "1"적용 공사범위 - 댐과 터널을 동시에 수반하는 수력발전소이외의 수력발전소 건설공사 ○ 유사계수 "0.7"적용 공사범위 - 화력(석탄, 중유, 가스, 복합), 원자력발전소건설공사 ○ 복합화력은 단위발전기 용량기준 ○ 평점계산방법: 해당실적×유사계수 ○ 시공 중인 유사공사의 실적은 당해공사의예정공정표상 5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대하여 기성검사를 필한 후 발주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성실적증명서를 받급받은 것에한함 - 인정실적규모: 시공중인 단위호기 시설용량×기성실적률×시공비율 2. 실적증명 ○ 발주기관 또는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완공실적 증명서 3. 실적인정 범위 ○ 국내외 실적 인정 - 일반건설업자 하도급 실적 제외 - 토건공사 수행실적만 인정 - 다수의 실적이 있을 경우는 각 업체별로 단위호기 1기 실적만 인정 4. 기간기산일: 입찰공고일 기준

심사는	분야	심 사 항 목			세 부 심 사 기 준		
분야별	배점 한도	항목별	배점 한도	분류기준	세부항목	배 점 공 동	참가업체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계	100		100			100	
1.시공 경험		□ 댐(토건공사) 가. 최근 2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시공 중인 실적 포함)	1	석괴댐 건설공사	○ 1개댐 높이 50m 이상의 석괴댐 건설 실적	14.00	1. 시공경험분야 : 댐(토건공사) "가"와 "나" 항목 중 수급체별로 택일적용
		() - ()			○ 1개댐 높이 45m 이상 50m미만의 석괴댐 건설 실적	13.30	2.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범위(댐) ○ 석괴댐 건설공사 ○ 시공 중인 동일공사의 실적은 당해공사의
					○ 1개댐 높이 40m 이상 45m미만의 석괴댐 건설 실적	12.60	예정공정표상 5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필한 후 발주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성실적증명서를 받급받은
					○ 1개댐 높이 35m 이상 40m미만의 석괴댐 건설 실적	11.90	것에 한함 - 인정실적규모 : 시공중인 댐 높이×기성 실적률×시공비율
					○ 1개댐 높이 35m미만의 석괴댐 건설 실적	11.20	3. 실적증명 ○ 발주기관 또는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완공 실적 증명서
							4. 실적인정 범위
							5. 기간기산일 : 입찰공고일 기준

심사는	분야	심 사 항 목			세 부 심 사 기 준		
분야별	배점	항목별	배점	분류기준	세부항목	배 점	참가업체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2 1 2	한도		한도	E 117 E	11 0 1	공 동	
1.시공 경험		□ 댐(토건공사) 나. 최근 2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시공 중인 실적 포함)		석괴댐 이외 댐 건설공사	○ 1개댐 높이 50m 이상의 석괴댐 건설 실적	9.00	○ 석괴댐 이외의 댐 건설공사 ○ 시공 중인 유사공사의 실적은 당해공사의
					○ 1개댐 높이 45m 이상 50m미만의 석괴댐 건설 실적	8.55	예정공정표상 5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필한 후 발주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성실적증명서를 받급받은 것에
					○ 1개댐 높이 40m 이상 45m미만의 석괴댐 건설 실적	8.10	한함 - 인정실적규모 : 시공중인 댐 높이×기성 실적률×시공비율
					○ 1개댐 높이 35m 이상 40m미만의 석괴댐 건설 실적	7.65	2. 실적증명 ○ 발주기관 또는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완공
					○ 1개댐 높이 35m미만의 석괴댐 건설 실적	7.20	실적 증명서
							3. 실적인정 범위 국내외 실적 인정 - 토건공사 수행실적만 인정 - 일반건설업자 하도급 실적 제외 - 다수의 실적이 있을 경우는 각 업체별로 1개 실적만 인정
							4. 기간기산일 : 입찰공고일 기준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세 부 심 사 기 준		
분야별	배점	항목별	배점	분류기준	세부항목	배 점	참가업체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正等包	한도	8 두 별	한도	せ用기せ	州十8 号	공 동	
1.시공 경험		다. 최근 5년간 토목·건축 의 실적 합계	_	공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합계가 추정가격의 2.5배 이상 최근 5년간 실적합계가 추정가격의 2배이상 2.5배 미만 최근 5년간 실적합계가 추정가격의 1.5배이상 2배 미만 최근 5년간 실적합계가 추정가격의 1배이상 1.5배 미만 최근 5년간 실적합계가 추정가격 미만 	11.00 10.45 9.90	1. 실적증명 ○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통보한 최종년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확인금액 또는 증명서 ○ 발주기관이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 실적증명 제출시 관련협회의 발급 자료 또는 발주자가 발급하는 실적 증명서(최근 5년 기준)중 택일 2. 공사인정 범위 ○ 토목・건축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토목공사, 건축 공사, 토목건축공사 ○ 인정실적금액 : 수급체 구성원별 실적금액 ×시공비율 3. 실적인정 범위 : 국내외 실적인정 4. 기간기산일 : 입찰공고일 기준 5. 추정가격 : 입찰공고 참조

심사는	분야	심 사 항 목			세 부 심 사 기 준		
분야별	배점	항목별	배점	분류기준	세부항목	배 점	참가업체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한도	0.15	한도	E 11/1E	· 11 1 0 · 1	공 동	
2. 기술 능력	45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 현황(해당		1) 발전소 건설경력	○ 기술자보유 점수합계가 80점이상	24.00	1. 발전소건설 경력인정범위○ 양수발전소 또는 댐과 터널을 동시에
0 4		공종 경험 기술자 우대)		기술자 보유현황	○ 기술자보유 점수합계가 70점이상 80점미만	21.60	수반한 수력발전소 건설경력 기간은 100% 인정
					○ 기술자보유 점수합계가 60점이상 70점미만	19.20	 단위호기 시설용량 100MW이상 발전소 (수력, 원자력, 화력) 또는 댐 또는 터널 건설경력 기간은 90% 인정
					○ 기술자보유 점수합계가 50점이상 60점미만	16.80	※ 전문공사업체 경력 불인정
					○ 기술자보유 점수합계가 40점이상 50점미만	14.40	2. 평가서류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포함) 또는 협회증명서 및 PMP 자격증 사본 등
							 신청업체가 시공중인 국내외 동일 및 유사공사 목록 공사명, 시설용량, 공사규모, 공사기간, 위치 등 기재
							3. 학력별 경력기준 ○ 고졸자는 4년, 전문대 졸업자는 2년을 경력 기간에서 감하여 대졸 수준의 경력으로 적용
							4. 기간기산일 : 입찰공고일 기준

○ 경력인정 평가기준

발전소 건설경력기준		분야별 최소필요인원								
발신소 신설경력기 간	사업관리	토 목	건 축	품질관리	공정관리	계	자 보유점수			
○ 현장소장 및 PM요원(건설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그 중 7년 이상 간부경력 소지자)	1		1			2	6			
○ 분야별 책임자요원(건설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그 중 5년 이상은 해당분야 간부경력 소지자)	1	1		1		3	5			
○ 건설경력 7년 이상인자		1	1	1	1	4	4			

주) 1. 기술자보유점수 계산방법

- 발전소 건설경력 기술자 보유현황 심사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보유한 기술자 인원으로 평가함(시공비율은 미 적용)
- 「분야별 최소 필요인원」이 총족되어야만 전체 평점을 인정하며 그 외는 불인정함. 간부경력은 과장급이상의 경력을 기준함
- 현장소장 및 PM요원의 경우 분야별 인원은 사업관리분야, 토목 또는 건축분야 인원임
- 기술자 보유점수는 분야별 해당 인원수 × 1인당 기술자 보유점수로 계산함
- 다수공사를 동시에 추진시 감점
 - · 영동양수 1,2호기 이외에 단위 Project A개의 ^①양수발전소 또는 ^②댐과 터널을 동시에 수반한 수력발전소 건설공사, Project B개의 단위호기 시설용량 100MW이상 발전소(원자력, 화력) 건설공사를 동시에 시공중일 때는 평점을 아래 산식에 의거 조정함
 - → 산식 : 기술자보유점수 합계 × (1 0.15 × A 0.1 × B)

주) 2. 분야별 적용기준

- 각 분야별, 경력기준별 최소 필요인원이 충족되어야만 전체평점을 인정하며 그 외는 불인정함.
- 사업관리,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 분야는 대학전공과 무관하게 실제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기간으로 평가함
- 공정관리 책임자는 발전소 건설공사 공정관리업무를 7년 이상 경험한 자 또는 동 공정관리업무 5년이상 경험자로서 미국 PMI(Project Manage ment Institute)가 발급하는 P-MP(Project Management Professional)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적용함.

심사	분야	심 사 항 든	루		세 부 심 사 기 준		
분야별	배점 한도	항목별	배점 한도	분류기준	세부항목	배 점 공 동	참가업체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2.기술 능력	45			2) 교육수료 현황	 ○ 교육점수 합계가 80점 이상 ○ 교육점수 합계가 70점 이상 80점 미만 ○ 교육점수 합계가 60점 이상 70점 미만 ○ 교육점수 합계가 50점 이상 60점 미만 ○ 교육점수 합계가 40점 이상 50점 미만 	6.00 5.40 4.80 4.20 3.60	 제출서류 교육수료 실적 교육기관이 발급한 교육수료 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 확인인) 제출 (교육분야, 교육기간, 피교육자명 기재필수) 시공중인 국내외 건설공사 목록(공사명, 시설용량, 공사규모, 공사기간, 위치 등 기재)

* 교육인정기관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에 따라 건설공사 관련 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 교육인정 수료실적 :
- ㅇ 최근 5년 이내에 품질관리,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 관련교육을 4주 이상 수료한 실적
- 교육기간은 개인별 교육기간을 합산한 기간임 단, 각종 자격증 취득 및 연장을 위한 교육은 인정치 않음.
- ㅇ 교육수료 5년 경과자의 재교육 실적
- ㅇ 35시간/주 이상을 1주 교육수료 실적으로 인정
- * 교육이수자별 교육점수 인정기준
- 최초교육자
- ㆍ 개인별 교육기간이 8주 이상인 경우 : 3점/인
- ㆍ 개인별 교육기간이 4주 이상 8주 미만인 경우 : 2점/인
- 4주이상 교육수료후 5년 경과자의 재교육 이수자
- · 5년이상 건설공사 시공경험이 있는 자로서 2주이상 재교육을 받은 경우 : 3점/인
- 3년이상 건설공사 시공경험이 있는 자로서 2주이상 재교육을 받은 경우 : 2점/인
- * 공동수급체 평점합계 = \sum (공동수급체 평점)

- * 다수공사를 동시에 추진시 감점
 -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영동양수 1,2호기 이외에 단위 Project A개의 ^①양수발전소 또는 ^②대과 터널을 동시에 수반한 수력발전소 건설공사 및 B개의 단위호기 시설용량 100MW이상 발전소(원자력, 화력) 건설공사를 동시에 시공중일 때는 교육점수를 아래 산식에 의거 조정한다. (단, 토건공사에 부분 참여시는 감점율 50%적용)
 - 산식 : 교육점수 합계 × (1 0.15×A 0.1×B)

심사분	-o‡	심 사 항 목			세 부 심 사 기 준		
LHCHU	배점 한도	항목별	배점 한도	분류기준	세부항목	배 점 공 동	참가업체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45	나. 신기술 개발·활용 실적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 부문 기술개발 투자 비율 (기술개발투자비/매출액)	8	1) 신기술 개발 2) 신기술 활용실적 건설부문 기술개발	○ 2건 이상 ○ 1건 ○ 60억원 이상 ○ 6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기준치 × 150%이상 ○ 기준치 × 100%이상 ○ 기준치 × 50%이상 ○ 기준치 × 10%이상 ○ 기준치 × 10%이상 ○ 기준치 × 10%미만	1.00 0.60 3.00 2.60 2.20 2.00	 제출서류 ○ 건설기술진흥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기술 개발 및 활용 실적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후 해당등급 배점 적용 ○ 신기술 활용실적 평가는 신기술 보유와 관계없이 평가 기술개발투자비율 관련서류는 관련협회 또는 공인회계사법 등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증명을 받은 것에 한함 일반건설 공사업 기준치 0.07%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기술개발투자비 및 매출액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후 해당등급 배점 적용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	세 부 심 사 기 준		
분야별	배점 한도	항목별	배점 한도	분류기준	세부항목	배 점 공 동	참가업체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2.기술 능력	45	라.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3	1) 사업관리 조직 보유 여부 ① 품질관리조직 ② 공정관리조직	 독립된 품질관리 조직 보유시 프로젝트조직 기타 조직에 포함 운영시 미보유 독립된 공정관리 조직 보유시 프로젝트조직 기타 조직에 포함 운영시 미보유 	0.50 0.30 0 0.50 0.30	1. 제출서류 ○ 사업관리 조직표 - 본사조직표 - 프로젝트 조직표 ○ 인력현황표 조직표에 연계된 부서별 인력현황 ○ 업무분장표 조직표에 연계된 부서별 업무분장표 2. 인정범위 ○ 조직소속 독립된 조직은 발전소건설 담당조직 계열에 소속된 조직만 인정 ○ 조직단위 부, 실, 과, 계, 팀 단위만 인정 ○ 인력구성 부서장과 부서직원으로 구성 시 인정 (최소 4명이상) ○ 담당업무 조직별 업무분장표에 담당업무가(계획수립, 실적관리, 성과분석, 시정 조치 등)명시된 경우와 사업관리절차서에 조직의 기능이 명시된 경우만 인정 ○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소속된 조직만으로 평가 (시공비율 미 적용)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	세 부 심 사 기 준		
분야별	배점 한도	항목별 한 <u>도</u>		세부항목	배 점 공 동	참가업체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2. 기술 능력	45	라.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3 필요한 사항	2) 지역업체의 하도급 계획여부	 ○ 4개 업체 이상 하도급 계획 경우 ○ 2개 업체 이상 하도급 계획 경우 ○ 하도급 계획이 없을 경우 	2.00 1.00 0	 제출서류 ○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 업체 인정범위 ○ 충청북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세	부 심	사 기 준		
분야별	배점 한도		항목별		배점 한도	분류기준			세부항목	배 점 공 동	참가업체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3. 시공 평가 결과	10	시공평	가		10	시공평가 점수	0	95점 90점 85점 80점 80점	이상 이상 이상	9.0	 제출서류 ○ 건설기술진홍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결과 실적증명서 ○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발주기관 발급 ② 평가방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입찰참가 업체가 토목・건축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결과 점수(2021.1.1이후 시공평가결과에 한한다)를 공사규모(금액)에 따라 가중평균(2개 이상시 해당, 참여지분율을 적용한 도급금액 기준으로 가중치 적용)하여 심사 ○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업체(이하 "시공평가 대상업체"라 한다)를 심사대상으로 하며, 평가는 각 시공평가 대상업체의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전체 시공평가 대상업체에서 해당시공평가 대상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이 시공평가 점수가 없는 실적(공사)에 대한 평가기준 ○ 건설기술진홍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 공사 : 80점 ○

심사분	분야					
분야별	배점 한도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4.신인도	+5 ~ -7	가. 시공업체로서 의 성실성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 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A.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2)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5	A. 1점이상2점미만B. 2점이상10점미만C. 10점이상15점미만D. 15점이상20점미만E. 20점이상	-0.2 -1.0 -2.0 -3.0 -5.0
		나. 하도급 관련사항	3)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	A. 평점95점 이상인 자 B. 평점90점 이상 95점미만인 자 C. 평점80점 이상 90점미만인 자 D. 평점70점 이상 80점미만인 자 E. 평점60점 이상 70점미만인 자	3.0 2.0 1.5 1.0 0.5

심사는	 분야					
분야 별	배점 한도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등 급	평 점
4.신인도	+5 ~ -7	나. 하도급 관련사항	4)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3 (-6)	A. 계약금액의 3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B. 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C. 계약금액의 1%이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1 (-2) +2 (-4) +1 (-2)
			5)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B.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C.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5.0 -7.0
			6)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7
			7)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A : 최우수 B : 우수	2 1
			8)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A : 최우수 B : 우수	1 0.5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9)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1~+1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초과	+1.0 +0.6 +0.3 0.0 -0.5 -1.0

심사	 분야					
분야 별	배점 한도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4.신인도	+5 ~ -7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신설)	+1	A. 평점 95점 이상인 자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F. 평점 75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11)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 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 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B. 과태료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1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 표1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2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5점씩 부여하여 최대 -2.0 까지 부여	-0.5/건
			13)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 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신설)	-1	A. 2회 받은 자 B. 3회이상 받은 자	-0.5 -1.0
			14)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A. 1회 받은 자 B. 2회이상 받은 자	-0.5 -1.0
		라. 녹색건설관련 인중실적	15)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1	A : 1등급 B : 2등급 C : 3등급 D : 4등급 E : 5등급	+1.0 +0.9 +0.8 +0.7 +0.6

심사분	<u></u> 분야					
분야별	배점 한도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4.신인도	+5	라. 녹색건설관련	16) 녹색건축 인증등급	+1	A : 최우수 B : 우수	+1.0 +0.5
	~ -7	인증실적	17) 녹색기술 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2	녹색기술 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2
			18) 상습 또는 고액 임금체불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19)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마. 고용개선 관련	20) 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라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 중 기간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2	A. 평균비율 0.5배 미만 B. 평균비율 0.6배 미만 C. 평균비율 0.7배 미만 D. 평균비율 0.8배 미만 E. 평균비율 0.8배 이상 및 미공시한 경우	+2.0 +1.5 +1.0 +0.5 0
			21) 최저임금법 위반	-2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2.0
		바. 일자리 창출 관련	22)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3	A : 1등급인 자 B : 2등급인 자	+3 +2

심사분	<u></u> 분야					
분야별	배점 한도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4.신인도	+5 ~ -7	바. 일자리 창출 관련	23)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 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 규칙」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 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 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 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사. 윤리행동강령 위반	24) 한수원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하여 한수원의 퇴직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1	A : 위반 1건(1명 기준) B : 위반 2건(2명 기준)	-0.5 -1.0

※ 신인도평가 주의사항:

- 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 2)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 3) '가'목 1)의 평가요소중 영업정지기간 등은 소송 등으로 효력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 4) 가점과 감정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 5) '나'목의 하도급관련사항 심사항목의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평가는 다음과 같다.
- 5-1) 신청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 5-2) 신청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은 A, B등급 중 하나의 등급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하도급자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제외)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토목 건축공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5-3) 신청자가 5-2)에 따라 신청하여 심사에서 가점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공사의 낙찰자(계약상대자, 이하 같음)로 결정된 경우에는 낙찰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53조(적격·PQ심사·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공사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5-4)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53조제5항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낙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5) 낙찰자가 5-3)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5-6)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시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낙찰자는 5-4)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향후 3년 내에 입찰 공고되는 사전심사기준의 적용을 받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받은 가점 대비 미사용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의 2배를 감점한다. 이 경우 산정된 감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 (감점산정방법(예): 표준하도급계약을 계약금액의 30%로 사용계획서를 제출 후 사용계획서 대비 88%를 미사용 한 경우

⇒0.88(미사용비율)× 1점(가점)× 2(2배 감점)=1.76→△1.7점)

- 5-7) 5-2)의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가점 부여 및 5-3) 내지 5-6)의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 부여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신청자)에게만 부여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을 받은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에서 제8조제2항에 따라 평가에 포함한다.
- 5-8)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타 공공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하여 표준계약서 이행여부에 대한 감점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심사자는 통보된 감점을 그대로 사전심사평가에 반영하며, 동일한 업체가 2건 이상의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반영하되, 감점의 한도는 12점으로 한다. 다만, 당해공사의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 이외의 업종은 감점한도를 8점으로 한다.
- 6) '나'목 7) 및 8)의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 6-1)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한다.
- 6-2) PQ신청 마감결과 대기업들만 참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 6-3)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 7)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 7-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 8) '다'목 13)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혈벌에 대한 감점은 동일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 9) '다'목 10)부터 14)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 10) '라'목의 녹색건설 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 10-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과한 규칙」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서류목록 4-3]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홈페이지(zeb.energy.or.kr)에서 해당건물/신청업체/인증 등급 확인을 통해 평가한다.
- 10-2) 녹색건축 인증등급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서류목록 4-3]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 10-3)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별지 제4호~제6호]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 10-4) 사전심사신청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또는 확인 받은 내용을 [서류목록 4-3] 또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별지 제4호~제6호]에 따라 발급 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단, 인증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10-5)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실적과 녹색건축 인증실적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11) '마'목 18)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12) '마'목 19) 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13) '마'목 20) 의 평가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 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공시된 고용인원 정보로 평가한다.
- 13-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은 [(기간없는 단시간근로자수+기간제 근로자수+소속 외 근로자수)/(소속근로자수+소속 외 근로자수)]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13-2) 종합건설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종합건설업)' 업종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평균을 말한다.
- 14) '마'목 21) 의 평가는 PQ신청 마감일(적격심사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제28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확정일자 시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15) '바' 항목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22)과 23)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23)로 평가 한다. 23)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 15-1) 22) 항목의 건설고용지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자료로 평가한다.
- 15-2) 22) 항목의 평가등급은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 15-3)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 15-4)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 15-5)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 (+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15-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 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15-7) 23)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15-8)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 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 16) '사' 항목과 관련하여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 위반 감점 시행에 따른 해설 반영
- 16-1) 기관별 윤리행동강령(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 제11조의 1)을 위반하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수원의 2 직급 이상 퇴직인력을 고용한 경우와 한수원의 퇴직임원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고용한 경우 1명당 0.5점 감점(-1점 한도). 이 경우 각 직급별 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이 각각 신설 되어 시행된 날 이후에 퇴직한 직원부터 적용한다.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수원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 16-2) 한수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서류목록 4-3) 미 제출시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 한다.
- 17) 신인도 평가결과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출서류

PQ 심사신청서

- 1. 공고번호 :
- 2. 공 사 명 :
- 3. 입찰일시 :

상기 건의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제반 제출서류 및 관련 증빙서류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별첨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본건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심사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 합니다.

2024. . .

제출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첨부: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원본 1부, 사본 각1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귀하

<u>접 수 증</u>

- 1. 공고번호 :
- 2. 공 사 명 :
- 3. 입찰일시 :

위 건 공사의 PQ 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조달처 계약실 (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목록

〈PQ 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평점 집계표〉

1.	시공경험분야 득점집계표	
	1-가-1 동일종류공사 공사실적증명서 1-나-1 유사종류공사 공사실적증명서 1-나-2 기성실적 증명서 1-다-1,2,3 년도별 실적 집계표 〈첨부서류〉1. 발주기관의 토목, 건축 공사실적 증명서	○○ 매 ○○ 매 ○○ 매 ○○ 매
2.	기술능력분야 득점집계표	
	2-가-1 발전소건설 경력기술자 보유현황 영세 〈첨부서류〉1. 경력기술자 보유현황 명세 〈첨부서류〉2. 학력별 경력기술자 보유현황 〈첨부서류〉3.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포함) 또는 협회 발급증명서 등 〈첨부서류〉1. 미국 PMP 자격증 사본 〈첨부서류〉2. 타사 경력보유시 근무업체발급 경력증명서 〈첨부서류〉4. 시공중인 국내외 발전소 건설공사 목록(원자력 및 화력) 〈첨부서류〉5. 기술자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협회 등록자의 경우 제외) 2-가-2 교육수료 현황 〈첨부서류〉1. 개인별 교육수료현황 명세 〈첨부서류〉2. 교육기관이 발급한 교육수료 증명서 사본 2-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첨부서류〉1. 신기술 개발실적 〈첨부서류〉2. 신기술 활용실적 〈첨부서류〉2. 신기술 활용실적 〈첨부서류〉3. 신기술 함상실적 2-다 최근년도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첨부서류〉3인회계사 또는 대한건설협회 발급 증빙서류 일체 2-라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첨부서류〉1. 조직표에 따른 인력현황 〈첨부서류〉2. 업무분장표 〈첨부서류〉3. 지역업체 하도급 계획서	
3.	시공평가결과 집계표 〈첨부서류〉시공평가 개별 증빙서류 일체	○○매, ○○권
4.	신인도 집계표 〈첨부서류〉항목별 증빙서류 일체	○○ 맥
5.	경영상태 득점집계표 〈첨부서류〉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서	○○ 매

6.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및 기타 입찰공고상 요구한 서류 일체

PQ 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평점 집계표

심	사	심 사 항 목		자기평가 평점				한수원 평가		
분야	배점	항 목	배 점 공 동	대표자 (1)	구성원 (2)	구성원 (3)	종합 평점	득점	확인	비고
1 시공경험	45	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토건공사 · 댐 건설공사 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 토건공사 · 댐 건설공사 다. 건설공사의 실적합계금액	34.00 20.00 14.00 22.00 13.00 9.00 11.00							"가"와"나" 항중 택일
2 기술능력	45	가. 기술자 보유현황 · 건설경력 기술자 보유현황 · 교육수료 현황 나. 신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 신기술개발 · 신기술활용 다. 최근 년도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라.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 품질관리 조직보유 여부 · 공정관리 조직보유 여부 · 지역업체 하도급계획 여부 소 계	30.00 24.00 6.00 4.00 1.00 3.00 8.00 8.00 0.50 0.50 2.00							
3 시공평가결과	10	시공평가	10.00							
1과 4신이나	+5,	소 계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나. 하도급 관련사항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라.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마. 고용개선 관련 바. 일자리 창출 관련 사. 윤리행동강령 위반 소 계	10.00 3.00 ~ -5.00 3.00 ~ -7.00 1.00 ~ -2.00 2.00 ~ 1.00 2.00 ~ -2.00 3.00 ~ 0.00 -0.50 ~ -1.00 +5.00, -7.00							
		합 계	100.00							

※ 한수원 평가란은 신청자 기재불요

2024.		
404 1 .	•	

제출자 주소 :

사고 상호 : 공동도급대표자 : (인)

1. 시공경험분야 득점집계표

	배 점		※한수		
구 분 -	공 동	득점	득 점	확 인	비 고
가. 동일종류 공사실적	34.00				"가", "나" 항목 중
나. 유사종류 공사실적	22.00				택일
다. 최근 5년간 공사 실적합계	11.00				
합 계					

- 주) 1.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최근 20년간 공사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공사 실적중 규모가 큰 1건의 공사만 인정하고, 공동수급체별로 동일 또는 유사실적을 택일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 2. 최근 5년간 시공 실적금액 합계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 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건축공사 실적만 적용.

※ 한수원 평가란은 신청자 기재불요

〈붙임〉1-가-1 동일종류공사 공사실적증명서 ○○매

1-나-1 유사종류공사 공사실적증명서 ○○매

1-나-2 기성실적 증명서 ○○매(발주기관발급)

1-다-1,2,3 년도별 실적집계표 ○○매

(발주기관 완공실적 증명서 또는 해당협회 확인서)

2024. . .

제출자 주 소 :

상 호:

공동도급대표자 : (인)

1-가-1. 공사실적증명서 (동일종류공사)

		일련번호					
공 사 명		장기계속공사여부					
수 요 기 관							
시 공 자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 번호					
계약 및 준공	계약 일자	도급 금액					
(장기계속공사는	착 공 일 자	기 성 금 액					
총공사기준 작성)	준공예정일자	관급 금액					
공 사 성 질	신규공사(),확장공사(),개선공사	(),개보수공사(), (해당란에 〇)					
공동도급자 및 내용 *주(1)							
하수급자 및 내용 *주(2)							
공사의 종류 및 개요 (건설업종별 내용)							
공사의 시공규모 (구체적 시공물량표시) * 별지작성가능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귀히	· 주 소:						
	상 호:						
	대표자 :	(인)					
	 위 사실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1) 공동도급의 이행방식, 비율, 공동도급자별 준공금액, 공사내용 등을 구분 작성
 - (2) 일반 및 특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수급자 면허, 기성금액, 공사내용 등으로 구분 작성
 - 해당 사항이 없으면 발급기관에서 해당없음으로 표시
 -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에는 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 당해공사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불분명한 경우 인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실적으로 인정

1-나-1. 공사실적증명서 (유사종류공사)

		일련번호
7)) H		
공 사 명		장기계속공사여부
수 요 기 관		
रो ज जो	회 사 명	대 표 자
시 공 자	영업 소재지	전화 번호
계약 및 준공	계약 일자	도급 금액
(장기계속공사는	착 공 일 자	기성 금액
총공사기준 작성)	준공예정일자	관급 금액
공 사 성 질	신규공사(),확장공사(),개선공시	·(),개보수공사(), (해당란에 〇)
공동도급자 및 내용 *주(1)		
하수급자 및 내용 *주(2)		
공사의 종류 및 개요 공사의 종류 및 개요		
(건설업종별 내용)		
공사의 시공규모		
(구체적 시공물량표시)		
* 별지작성가능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귀하	주 소:	
	상 호:	
	대표자 :	(인)
	 위 사실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1) 공동도급의 이행방식, 비율, 공동도급자별 준공금액, 공사내용 등을 구분작성
 - (2) 일반 및 특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수급자 면허, 기성금액, 공사내용 등으로 구분 작성
 - 해당 사항이 없으면 발급기관에서 해당 없음으로 표시
 -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에는 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 당해공사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불분명한 경우 인정가능한 범위내 에서 만 실적으로 인정

1-나-2. 기성실적증명서

								일련	번호		
공		사	명					장기계속	공사여부		
수	요	기	관						·		
시		공	자	회	사 명			대 3	포 자		
<u> </u>		0	^r	영업	소재지			전 화	번 호		
계약 및	준	<u>7</u>		계 약	일 자			도 급	금 액		
(장기계	속공	사는		착 공	일 자			기 성	금 액		
총공사기	기준	작성)		준공여	정일자			관 급	금 액		
공 시	나	성	질	신규공	랑사(),	확장공사(),개선공/	사(),개5	크수공사(), (해당팀	반에 ○)
공동도급	급자	및 내용	용 *주(1)								
하수급기	자 및	내용	*주(2)								
공사의	종류	및 개	요							예 정 공정률	
(건설약	겁종별	별 내용)							공정률	
공사의	세브	1기요		공종	단위	총공시	· 기시공	잔량	총계약 금액	기성 금액	기성률 (%)
0/1/1	~11 T	71 0									
				합계							

첨부 : 총 계약물량과 기성부분 실적세부내역서(수량 및 금액포함) 1부.

위의 공사는 입찰공고일 현재 PQ 해당공사의 총공사 예정공정과 기성검사를 필한 실행공정이 50%를 초과한 공사로서 기성검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기성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귀하 주 소:

상 호:

대표자 : (인)

위 사실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1) 공동도급의 이행방식, 비율, 공동도급자별 준공금액, 공사내용 등을 구분작성
 - (2) 일반 및 특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수급자 면허, 기성지급, 공사내용 등으로 구분 작성
 - 해당 사항이 없으면 발급기관에서 해당 없음으로 표시
 -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에는 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 당해공사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불분명한 경우 인정가능한 범위내에서만 실적으로 인정

1-다-1. 년도별 실적집계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 등)

(단위 : 천원)

번호	공	사	명		계약일	준공일	준공정산 금액	도급액	발주기관	비고
01										
02										
		년도	소	계						
		년도	소	계						
		년도	소	계						
		년도	소	계						
		년도	소	계						
	합		계							

〈첨부〉1.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의 토목건축공사 등 완공 실적증명서 ○○매

		ZUZ 4.		
주	소 :			
상	호 :			
대3	포자 :			(인)

2. 기술능력분야 득점집계표

구 분	배 점	두 점	※ 한수	원 평가	固	고
T ±	공 동	一	득 점	확 인	H	14
가. 기술자보유 현황	30.00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현황	4.00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 기술개발	8.00					
투자비율						
라.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3.00					
사항						
합 계	45.00					

※ 한수원 평가란은 신청자 기재불요

〈붙임〉	2-7}-1	발전소건설 경력기술자 보유현황	
	2-7}-2	교육수료 현황	
	2-나	신기술 개발 활용 실적 현황	
	2-다	최근년도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bigcirc\bigcirc$ \square
	2-라	기타 당해공사에 시공에 필요한 사항	$\bigcirc\bigcirc$ \square

2024. . .

주 소: 상 호: 공동도급대표자: (인)

2-가-1. 발전소건설 경력기술자 보유현황

			시공경력	(인원수	× 배점	= 평점)			한수위	원평가
구 분	사업 관리	토목	건축	품질 관리	공정 관리	합계 (명)	배점	평점 합계	득점	확인
경력 10년이상 (그중 간부7년이상)							6			
경력 7년이상 (그중 간부5년이상)							5			
경력 7년이상							4			
	1	1	1	1				,	조정점	수합계:

- 현장소장 및 PM요원 : 건설경력 10년 이상으로 그중 7년 이상 간부경력 소지자
- 분야별 책임자요원 : 건설경력 7년 이상으로 그중 5년 이상 해당분야 간부경력 소지자
- 일반건설기술자 : 건설경력 7년 이상 소지자
- 양수발전소 또는 댐과 터널을 동시에 수반한 수력발전소 건설경력 기간은 100%, 단위호기 시설용량 100MW이상 발전소(수력, 원자력, 화력) 또는 댐 또는 터널 건설경력 기간은 90% 인정
- 다수공사를 동시에 추진시 감점처리
 - Project A개의 ^①양수발전소 또는 ^②댐과 터널을 동시에 수반한 수력발전소 건설공사
 - Project B개의 단위호기 시설용량 100MW이상 발전소(원자력, 화력) 건설공사
 - 산식 : 교육점수 합계 × (1 0.15 × A개 0.1 × B개)
- 학력별 경력기준 : 대졸기준이며 고졸자는 4년, 전문대졸자는 2년을 경력기간에서 감하여 적용 단, 간부경력은 제외
- 한수원 평가란은 신청자 기재불요

〈첨부서류〉	1. 경력기술자 보유현황 명세	
	2. 학력별 경력기술자 보유현황	$\bigcirc\bigcirc$ \square
	3.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포함) 또는 협회 발급증명서 등	$\bigcirc\bigcirc$ \square
	4. 시공중인 국내외 발전소 건설공사 목록(원자력 및 화력)	$\bigcirc\bigcirc$ \square
	5. 기술자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협회 등록자의 경우 제외)	$\bigcirc\bigcirc$ \square
	2224	
	· - ·	
	2024 주 소 : 상 ㅎ ·	

대표자 :

(인)

경력기술자 보유현황 명세

가. 현장소장 및 PM요원

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청	최종학력		입사일 현직위		건설경력 (년,월)①		한수원 확 인
번오	₹8 °6	78 현 필 필	분야	학교명	학과	급기원	선석기	전체	간부	확 인

나. 분야별 책임자 요원

번호 성명		게 나 이 이	신청	최종학력	최종학력		취기이	건설경력 (년,월)①			한수워
· 변호	성명 -	생년월일	신청 분야	학교명	학과	입사일	현직위	전체		~1 34	한수원 확 인

다. 일반건설 경력자

번호	성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입사일	현직위	건설경력 (년,월)①		한수원 확 인	
			학교명	학과			전체	경력 분야	~ L
			_						

※ 작성요령 : ①란은 월 미만 절사

2024. . .

주 소: 상 호:

학력별 경력기술자 보유현황

н.1	쥐리니그	-d -d	ما ما	1인당	평점	한수원	<u></u> 평가
분야	학력기준	경력	인원	평점	합계	득점	확인
	대 졸	건설경력 10년이상 그중 간부 7년이상자					
	전문대졸	건설경력 12년이상 그중 간부 7년이상자					
	고 졸	건설경력 14년이상 그중 간부 7년이상자					
	소 계						
	대 졸	건설경력 7년이상 그중 간부 5년이상자					
사업	전문대졸	건설경력 9년이상 그중 간부 5년이상자					
관리	고 졸	건설경력 11년이상 그중 간부 5년이상자					
	소 계						
	대 졸	건설경력 7년이상자					
	전문대졸	건설경력 9년이상자					
	고 졸	건설경력 11년이상자					
	소 계						
	대 졸	건설경력 10년이상 그중 간부 7년이상자					
	전문대졸	건설경력 12년이상 그중 간부 7년이상자					
	고 졸	건설경력 14년이상 그중 간부 7년이상자					
	소 계						
	대 졸	건설경력 7년이상 그중 간부 5년이상자					
토목	전문대졸	건설경력 9년이상 그중 간부 5년이상자					
	고 졸	건설경력 11년이상 그중 간부 5년이상자					
	소 계						
	대 졸	건설경력 7년이상자					
	전문대졸	건설경력 9년이상자					
	고 졸	건설경력 11년이상자					
	소 계						
	대 졸	건설경력 10년이상 그중 간부 7년이상자					
	전문대졸	건설경력 12년이상 그중 간부 7년이상자					
	고졸	건설경력 14년이상 그중 간부 7년이상자					
	소 계						
_1 ~	대 졸	건설경력 7년이상 그중 간부 5년이상자					
건축	전문대졸	건설경력 9년이상 그중 간부 5년이상자					
	고졸	건설경력 11년이상 그중 간부 5년이상자					
	소계	기사거리 7대시사기					
	대 졸	건설경력 7년이상자					
	전문대졸	건설경력 9년이상자					
	고 졸	건설경력 11년이상자					

분야	학력기준	경 력	인원	1인당	평점		l 평가
·	-1.1/16	0 1	L L	평점	합계	득점	확인
	소 계						
	대 졸	건설경력 10년이상 그중 간부 7년이상자					
	전문대졸	건설경력 12년이상 그중 간부 7년이상자					
	고 졸	건설경력 14년이상 그중 간부 7년이상자					
	소 계						
품질	대 졸	건설경력 7년이상 그중 간부 5년이상자					
품결 관리	전문대졸	건설경력 9년이상 그중 간부 5년이상자					
29	고 졸	건설경력 11년이상 그중 간부 5년이상자					
	소 계						
	대 졸	건설경력 7년이상자					
	전문대졸	건설경력 9년이상자					
	고 졸	건설경력 11년이상자					
	소 계						
	대 졸	건설경력 10년이상 그중 간부 7년이상자					
	전문대졸	건설경력 12년이상 그중 간부 7년이상자					
	고 졸	건설경력 14년이상 그중 간부 7년이상자					
	소 계						
	대 졸	건설경력 7년이상 그중 간부 5년이상자					
공정	전문대졸	건설경력 9년이상 그중 간부 5년이상자					
관리	고 졸	건설경력 11년이상 그중 간부 5년이상자					
	소 계						
	대 졸	건설경력 7년이상자					
	전문대졸	건설경력 9년이상자					
	고 졸	건설경력 11년이상자					
	소 계						

※ 한수원 평가란은 신청자 기재불요

2024. . .

주 소: 상 호:

경 력 증 명 서

1. 성 명: (인)

2. 생 년 월 일 :

3. 입 사 일:

4. 최 종 학 력 : 대학교 대학 학과졸업

5. 졸업일자: 년월일

6. 경 력:

번호		건설참 공사명	∙व्ये ६		시설용량	근무 일자	근무 기간 ① (년,월)	경력분야 및 수행업무 ② (상세히 작성)	근 무 회사명	직위
	(착공:	, 준공:)	발주처	시설용량 (MW)		(년,월)			

※ 작성요령 ː

- ① 란의 합계는 월미만 절사
- ② 란의 수행업무중 공정관리분야는 공정표상의 Activity 또는 관리단위수 기재
- 〈첨부〉 1. 타사 경력보유시 근무업체발급 경력증명서
 - 2. 미국 PMP 자격증 사본

2024. . .

주 소: 상 호:

대표자 : (인)

[첨부서류 4]

시공중인 국내외 발전소 건설공사 목록

(양수, 수력, 원자력, 화력 등)

(작성기준일: 입찰공고일기준)

발전소명 (양수, 수력,	비조리	위치	시설 용량	발전 <i>2</i> 기	소건설 간	원계약 또는 하도급 구 분	공사 범 (주설 ^비 부대	참여 위 기 또는	도급액	참여 공사	щч
발전소명 (양수, 수력, 원자력, 화력 등으로 구분)	발주처		시설 용량 (MW) ③	착공일	준공 예정일	아도급 구 분 ①	구분	의 시공 비율	(억원)	참여 공사 기간 (참여일수)	비고

※ 작성요령:

- ① 란은 원계약자로 참여시는 「원계약」, 하도급계약자로 참여시는 「하도급 계약」이라 기 재하고 비고란에 원계약자 기재
- ② 란은 토건공사에 참여시는 「주설비」, 부대설비에 참여시는 「부대설비」라고 기재하고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시공비율(%) 기재
- ③ 시설용량에 관계없이 모두 기재

주 소:	
상 호:	
대표자 :	(인)

2024. . .

2-가-2. 교육 수료 현황

교육일수	인원수	1 인 당 교육점수	교육점수 합 계	한수원	비고	
	201	교육점수	합계	득점	확인	7135
8주 이상		3 점				
4주 이상 8주 미만		2 점				
합	卢	1				

※ 한수원 평가란은 신청자 기재불요

〈첨부서류〉1. 개인별 교육수료현황 명세	
2. 교육기관이 발급한 교육수료 증명서 사본(발급기관 양식)	○○매

2024. . .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개인별 교육수료 현황명세

							고으기가	한수원	평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교육분야	교육기관	교육기간 (주) ①	교육기간 (주)	확인

*	작성요령	ĭ	1	라의	교육기	가은	주 다	위로	작성하여	주	미만은	절	사
/•\	1 0 0	•	•		<u> </u>	1 1 1 1	1 -	11-	1 0 -1 1		1 1 1 1	ᆫ	

※ 한수원 평가란은 신청자 기재불요

2024. . .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2-나. 신기술 개발・활용 실적

구 분	실적	득점	한수	원평가	증빙서류(제출서류)	비고
L	르ㅋ	7.0	득점	확인	6 6 시 11 (제 글 시 11)	71 12
신기술 개발 - 지정 신기술 건수					신기술 지정증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33조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7조 규정) ○○매	
신기술 활용 - 신기술 활용금액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또는 한국환경공단 발행) ○○매	
합 계						

※ 한수원 평가란은 신청자 기재불요

〈첨부서류〉	1. 신기술 개발실적 현황 2. 신기술 활용실적 현황	○○매 ○○매
	2024 주 소 : 사 호 :	

대표자 :

(인)

신기술 개발실적 현황

번호	신기술 명칭	지정번호	개발자	지정일	보호기간	한수원 확인	비고
1							
2							
3							
4							
5							
6							
7							
8							
9							
	합 계						

작성요령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3조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의함
- 2.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여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
- 3.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을 인정

0004		
2024.	_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첨부서류 2]

신기술 활용실적 현황

번호	건설	신기술 명칭	지정 번호	공사명	발주자명	계약일/ 준공일	기술분야	당해연도 계약금액	연도별 활용금액	한수원 확인
1										
2										
3										
4										
5										
6										
7										
8										
9										
	합	계								

작성요령

- 1. 건설기술진홍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신기술활용실적"에 따른 '한국건설교통신기술 협회'자료 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행한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
- 2. 심사기준일 현재 직전년도까지의 보호기간 동안 활용된 누계금액으로 평가

〈첨부서류〉 1. 년도별 건설신기술 활용공사비 내역

OO 매

2024. . .

주 소: 상 호:

2-다. 최근년도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구 분	배 점	_ 평가기준	평?	한수원평가		증빙서류 (제출서류)		
공 동	0/1/1元	금액(천원)	비율(%)	득점	득점	확인](제줄서듀) 	
건설부문	8.00	기술개발비						
기술개발	8.00	매출액						

[※] 한수원 평가란은 신청자 기재불요

〈첨부서류〉 공인회계사 또는 대한건설협회 발급 증빙서류 일체 ○○매

2024. . .

주 소: 상 호:

2-라.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구 분	배 점	· 득점	한수원 평가		증 빙 서 류	비고
	공 동	, ,	득점	확인	(제 출 서 류)	
○ 사업관리조직 보유여부 가) 품질관리 조직 나) 공정관리 조직	0.50 0.50				○ 사업관리 조직표 ○○매 ○ 각조직표에 따른 인력현황표 ○○매 - (첨부서류 양식 1) ○ 업무분장표 ○○매 - (첨부서류 양식 2)	
○ 지역업체 하도급계획 여부						
- 4개업체 이상	2.00				○ 하도급 계획서 ○○매	
- 2개업체 이상	1.00					
합 계	3.00					

[※] 한수원 평가란은 신청자 기재불요

〈첨부서류〉 1. 조직표에 따른 인력현황 ○○매

2. 업무분장표 ㅇㅇ매

3. 지역업체 하도급 계획 ㅇㅇ매

2024. . .

주 소: 상 호:

조직표에 따른 인력현황

부서명	일련 번호	성 명	직위	직책	담당업무

작성요령 : 조직표에 나타난 최하위 조직 단위까지 3	エフ]
-------------------------------	-----

2024. . .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업무 분장표

조직단위별		디	rl.	업	무
본부단위	부서명①	1	~ 	뇁	Т

작성요령 : ① 란은 최하위조직 단위까지 구분, 작성

2024. . .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하도급 계획서

※ 충청북도에 본사를 둔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분야, 하도급 예상금액, 하도급 시기 등 기술

2024. . .

주 소: 상 호:

3. 시공평가결과분야 득점집계표

그 ㅂ		배 점	두 점	※한수원 평가	비고	
'	구 분	공 동	7 7	득 점 확 인	e) <u>r</u>	
시공평가		10.00				
ਨ੍ਹੇ	계	10.00				

※ 한수원 평가란은 신청자 기재불요

〈붙임〉 관련 증빙서류

○○매, ○○권

2024. . .

주 소:

상 호:

공동도급대표자 : (인)

4-1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입찰(계약)금액	7	E준 하도급 계약서 사선	는 하도급 계약서 사용 건설기계 임대 표준계약서 사		
(A)	하도급	표준 하도급	비율	금액(C)	비율
	공사금액	계약서사용 금액(B)	(B/A)	급액(0)	(C/A)

- 주) 1. 건설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은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일 경우에 한함
 - 2.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금액은 하도급 공사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위와 같이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오며, 위 계획서에 따라 신인도 가점을 받은 후 실제 계약 이행시에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향후 조달청 및 타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신인도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대표자 :

구성원(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대표자:

4-2.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

신인도 등록 신청분야 (해당란 √ 표)			」제17조에 따른 」제16조에 따른	'제로건축물' 인증 '녹색건축' 인증		
	인증번호					
	건축물명					
인증내용	소재지 주소					
(건축물) ※본인중만 해당	인증유효기간	<u>}</u>				
	인증일자					
	인증등급					
	회사명					
시공업체	대표자					
(건축공사)	사업자등록변	 <u></u> 보호				
	건축(토건)공	사업 등록번호				
	부 서		연락전화			
신 청 인 연 락 처	직 위		팩스번호			
U 7 /1	성 명		e-Mail			
		위 내용을 증' 년 월 '	명함 일			
	인증기관명	:	(관약	원)		
인증서 발급부서 : 담당자 : 직급	성명	(인)	(전화번호:)		
2024년 워 의						

2024년 월 일

신 청 인(시공업체)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인)

주) 인증유효기간이 없는 경우는 "인증유효기관 없음"으로 표시

※ 붙임 서류 : 인증서 사본 1부. 끝

4-3. 한국수력원자력(주)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수원(주) 퇴직자(퇴직 후 3년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비고
임 원		
1(갑)직급		
1(을)직급		
2직급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수원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 2. 한수원(주)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사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신인도 평가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